



보험금 청구서

App DB생명 모바일 창구

Web m.idblife.com 접속 ▷ 사고보험금 메뉴

모바일

보험금 청구 관련 처리를 위해서는 고객님의 <mark>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mark>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보험금 청구서 ②구비서류(병원서류 등)와 함께 ③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술해 수시기 바립	[니다.				
고객정보						개정일:	: 2020년 9월 1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	휴대전화 _	_	하시는일	
수익자 (보험금을 받는자)	성명	주민번호 -	-	휴대전화 _	_	피보험자	 와 관계
※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상동] 으로 작성 가능	주소				E-mail		
■ 보험금 수령계3	좌 (보험금 수익자 기준)						
입금받으실계좌	9	행 계좌번호			예금주	현급	금수령선택시 🗌
※고객정보 변경이	필요하신 분은 당사 콜센터 1	588-3131로 연락하셔	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	l다.			
청구사유	및 사고내용						
청구원인	□ 질병 (신체 내부요인으로	로 몸이 불편한 경우)	(◯ 재해 (급격, 우	연한 외부사고로 다	친 경우)	
청구유형 (중복선택 가능)	확인된 사고내용과 관련하 (아래 청구유형을 체크하시면 사망 장해 ※ 일본 보험금만 요청하실 2	보다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원 □실손	□치아 □기	타 / □연급	
			시 분	1			
פאוהאג	나고내용 사고경위(구체적으로 작성) 병명(진단명) 실손타사가입여부(단체실손포함) 예□ 아니오□ 보험회사 가입건수 건						
시프레ə							
	실손타사가입여부(단체실손	 는포함) 예 0	아니오 보험회사	 .}		가입건수	 건
추가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여!	 쿠 예	 가니오 ※ 피보험자	·가 의료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손보	ᆜ 험료 할인	
일부청구	청구유형		청구사유				
▋심사과정	 안내신청						
진행과정안내	□ 신청(알림톡)	□ 미신청	지급병명안니	-ㅐ □ 신청('	알림톡, 피보험자 연택	락처로 안내)	□ 미신청
FP(모집인) 안니	H □신청	□ 미신청	지급내역안니	- H 의림	투 □우편	☐ E-mail	□ 미신청
필수 문 콜 센 터 2 158	# 학	(성법 95조의 2 제3형 (신용)정보처리 동의 구하신 보험금은 서류를 급해 드리며 지급지연시 험금 지급 심사 중 현장 조 험사기(허위입원, 고의사고 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던	서에 대한 내용을 확'를 접수한날로부터 3영 보험업법에 따라 지연 S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 1, 피해과장, 서류 위·변조	인 후 동의합니다 업일 이내 (단, 지 사유를 안내해 드 업법에 따라 위탁업	ㅏ. 급사유의 확인이 필요 리며, 지급시 지연이지 테(손해사정법인)에 조	요한 경우 10영약 나를 더하여 지급 사업무를 위탁할	업일 이내)에 해 드립니다. 수 있습니다.
41 = 01 = 1			수익자 (청구인	<u>l</u>)			서명(인)
청구일자	년	월 일	대표친권자				서명(인)
			※ 수익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 대표친권자를 지정하여	여 서명하고, 대표친권자는 다	나른 친권인과 합의하	에 친권을 행사합니다.
회사확인란	FP □지점 □우편	□팩스 접수일:		접수창구:		접수자:	
■보험금 접수병	남법 (FAX/모바일/홈페이지 집	접수는 16시까지 접수된 건	건만 당일 접수 처리, 이후	접수건은 익일(영업	 업일 기준)에 처리됩니다	h. [청구금액 300	만원 이하만 가능]
▽ 우 편 0479	 99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	7길 49 (성수동2가) 성	선수W센터 데시앙플렉	스 723호 DR생5	병 보험금 접수 담당지		

출 홈페이지 www.idblife.com ▷ 사고보험금 메뉴

스 0505-129-3134 (사고보험금 청구 전용)

금 팩





개인(신용)정보 처리 필수동의서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관련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고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아래 동의 사항을 읽고 동의하는 경우 각 동의함에 체크하여 주시고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후견인)가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신용)정보 등의 수집·이용 목적

보험금 지급·심사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 및 보험 사고조사 (보험사기 조사 포함), 보험 계약유지·관리, 보험금지급관련 분쟁대응 및 고객이력관리, 민원처리 및 소비자 보호, 증빙서류보존, 이체(R/T, 자동이체포함) 및 입출금 업무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직업, 음성정보,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계좌정보, 당사 및 타보험사 우체국보험, 공제사업자 포함) 의 보험계약정보 및 보험금 지급정보 (사고정보포함),보험사고조사 (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신용)정보[경찰,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류,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손해사정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손해사정서 등)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 (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 이용하며 별도보관)

※거래 종료일이란 당사와의 모든 거래관계가 계약의 만료, 해지·해제·취소,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을 뜻합니다. 세부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아래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및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에서의 거래종료일도 동일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여부

동의함	

$oldsymbol{0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 및 당사의 업무수탁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신용)정보 등의 조회 목적
 - 보험금 지급 · 심사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 및 보험 사고조사 (보험사기 조사 포함)
- 조회하는 자

당사 (DB생명)로부터 보험금지급·심사 및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TSA, C&S, A+, 해성, DB CAS 손해사정 등]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보험계약정보,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 (사고정보포함), 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

■ 조회 동의 유효기간 및 조회자의 보유·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 (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 이용하며 별도보관)

74	വ	' עוג'	/ XI H ()	一大六		ᅵ여ㅂ
7 11	ΥI	ᄭᅗ)정보의	・シェ	・キニ	-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 처리 필수동의서



0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 및 당사의 업무수탁자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신용정보집중기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 공공기관 등: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요율산출기관, 경찰,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

보험회사 등: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국내·국외 재보험사, 공제 사업자, 체신관서 (우체국보험), 당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심사,

사고조사, 보험계약의 유지 ·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 받은 자

(TSA, C&S, A+, 해성, DB CAS 손해사정, 고객안내 발송 대행업체 등)

당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체)

이체 (R/T, 자동이체 포함) 및 입출금 업무 관련 기관 (계좌 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계약관계자 : 보험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 의료기관 등 : 병원 및 기타 의료기관, 의사, 변호사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보유 · 이용기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계약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업무

공공기관 등 : 보험업법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 (위탁업무 포함), 보험사고(사기) 방지 및 조사 등

보험회사 등 : 보험사고조사 (보험사기조사포함)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 및 입출금 등 금융거래업무(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 이체 등)

관련 기관, 고객안내자료 제작 및 발송관련업무

계약관계자 : 손해사정서 수령

의료기관 등 : **의료심사 및 자문, 소견서, 진료기록 열람, 법률자문 및 소송관련 업무 등**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01. 개인(신용)정보 등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항목과 동일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www.idblife.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 여부

동의함

$oldsymbol{0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 및 당사의 업무수탁자가 상기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민감정보 (질병, 상해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를 처리(수집·이용, 조회, 제공 등) 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조회, 제공 등	등) 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	· 십니까?				,		
질병(상해)정보 제공 동의 여부				동	의함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여부					동	의함		
	신 청 일				년		월	일
피보험자		서명(인)	친권자	부	서명(인)	모		서명(인)
수 익 자		서명(인)	(후견인)					서명(인)

- ※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피보험자, 수익자 같은 경우 피보험자만 서명해도 무방)
- ※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서명바랍니다.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 부모 쌍방이 각자 서명해야 합니다.
- ※ 대표 수익자를 지정하는 경우 서명란에 대표수익자 1인이 서명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 구비 서류 안내

구 분		구 비 서 류	발급처			
공통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	보 처리 동의,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은 앞면(사진면)만)	보험회사			
추가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 가족관계 확인 서류(예: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관공서			
수기 서류 (필요시)	• 대리인 청구 시(보험금 위임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	 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	보험회사 관공서			
	• 재해사고시 재해 입증서류(각종	사고사실 확인원/지급결의서/사고경위서 등(상세내용은 하단 참조)	서류별 상이			
	• 사망진단서 - 사망진단서(시체검(피보험자 기본증명/	안서) 원본 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 대조필 포함), 서(사망사실 기재)	의료기관 및 주민센터			
사망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 - 상속관계 확인서류(예시 : 가족관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2		보험회사 관공서			
장해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체 운동장해는 AMA방식의 운동각도 기재) 상해 -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 필름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비장, 신장적출 :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의료기관 (종합병원)			
진단	• 진단서 [예시] • 암: 조직검사결과지 • 진단사실 확인서류 •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정밀검사결과지(CT, MRI, 심전도 등) • 치매: CDR척도검사결과지, 뇌영상검사(CT, MRI) 결과지					
입원	• 진단서: 단,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 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제외					
통원	• 진단서, 통원확인서,(통원일자별)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 진단명 통원일자 및 기간이 포함된 서류 中 택일 단, 3만원 이하 청구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으로 청구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진단명, 입원일자 및 기간이 포함된 서류 中 택일					
실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서, 통원확인서 등 진단명, 통원일자 및 기간이 포함된 서류 中 택일 - 3만원 이하: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3만원 이상: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 - 10만원 초과: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 진료비 세부내역서					
골절	• 진단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					
수술	• 진단서, 수술확인서 등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보철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치과 치료 확인서(당사 양식) 또는 치과 치료 진단서*, 진료기록사본(원본대조필) 치료 전후 X-ray 또는 파노라마 사진				
치아	보존 (레진, 크라운 등)	치과 치료 확인서(당사 양식) 또는 치과 치료 진단서*, 진료기록사본(원본대조필)	의료기관			
	치석제거 (스케일링)	치과 치료 확인서(당사 양식) 또는 치과 치료 진단서*				
ENOT		지료한 치아번호, 진단명, 질병코드,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 상태, 치료원인, 진단 확정/시작/종료일 등	01==1=:-:			
태아 보험	신생아입원비 • 출생증명서 또는 • 진단서: 단, 50만	= 가족관계증명서 t원 이하 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	의료기관 및 주민센터			

[재해 입증서류 예시] • 교통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군인재해사고 공무상병인증서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 내용 기재 등
-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탈사이트 민원24시(www.minwon.go.kr)등에서 발급 서류별 발급비용은 해당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 약국- 비급여진료비 정보)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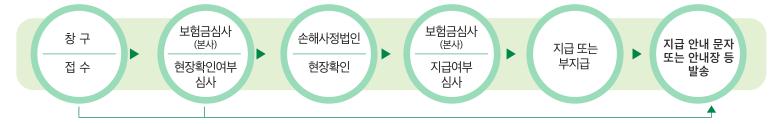


및 피해구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심사 절차 안내



- ※ 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DB생명에 접수되는 경우 LMS 또는 알림톡을 통하여 접수완료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보험사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험사고조사 업무 등을 제 3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및 질병정보 등에 대한 수집/조회 및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손해사정법인: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DB생명에서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DB생명에서 부담합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신 경우 비용 부담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소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DB생명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DB생명이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고객님이 부담하는 경우 DB생명이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DB생명과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사항	• 장해 진단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요청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보상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3차 의료기관: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의료심사	•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제 3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재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DB생명이 부담합니다.
보험금 지급지연 및 가지급제도	 보험금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별도 안내를 드리며 약관에 정한 바와 같이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가지급 제도란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보험사고 조사를 시행하게 될 경우, 청구 보험금 중 조사나 확인이 필요없는 사항에 대한 보험금을 고객의 요청에 의해 먼저 지급해 드리는 제도 입니다. ※가지급 보험금은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로 산정됩니다.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지급 등 (비례 분담 적용)	 상해 질병으로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분담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비례분담과 관련하여 귀하가 원하실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청구관련 구비서류 제출을 대행해 드립니다. 이 경우 타회사에 자료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심사절차 및 지급 결정 안내	DB생명 홈페이지(www.idblife.com)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별도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재심사 청구	DB생명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DB생명 소비자보호팀으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 0619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 6층(대치동, DB금융센터)
분쟁조정 절차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치매보험금 지급조건 안내 아래의 조건이 모두 해당되어야 치매보험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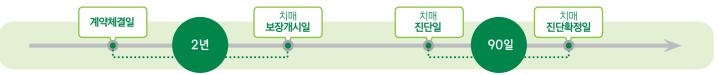
구 분	주 요 !	내 용				
치매상태의 정의	'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저 또는 중등도 또는 경도의 인지기능의 장애 가 발생한 상	대해 또는 질병 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 태를 말합니다.				
치매 보장개시일	부터 보장합니다. ※다만, 아래상품의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부터 보장합니다.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				
	(무) 간병비 평생받는 치매보험(무해지환급형)(1809) (무) 간병비 평생받는 치매보험(1811)	(무) 백년친구 치매보험(1904) (무) 간병비 평생받는 치매보험(1904)				
	(구) 건덩미 항정본는 시메모임(1611) (무) 간병비 평생받는 치매보험(무해지환급형)(1811)	(무) 간병비 평생받는 치매보험(무해지환급형)(1904)				
①-1 중증 인지장애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 란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결과가 3점 이상(단,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 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 보장개시일'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①-2 중등도 인지장애	'중등도의 인지기능의 장애'란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결과가 2점(단,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 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 보장개시일'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①-3 경도 인지장애	'경도의 인지기능의 장애' 란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결과가 1점(단,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 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 보장개시일'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치매의 진단조건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경과된 이후에 피보험자의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리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보상하지 않는 치매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치매의 보장개시 및 진단확정(예시)







■ 치매보장 상품별 보장하는 인지장애 등급과 보장개시일

치매보장상품		보장 인지장애 등급			보장개시일	
구 분	상품명	중증인지장애 ①-1	중등도인지장애 ①-2	경도인지장애 ①-3	2년 이후	1년 이후
	(무) The 좋은 생활보장보험 (1505) (1종)	0	0	0	0	
	(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생활비 보장보험 (1601) (1종)	0	0	0	0	
	(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생활비 보장보험 (1604) (1종)	0	0	0	0	
	(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생활비 보장보험 (1701) (1종)	0	0	0	0	
	(무) 라이프타임 생활보장보험_v15 (1종)	0	0	0	0	
주계약	(무) 동부치매플러스 보장보험 (1704)	0	0	0	0	
1	(무) DB치매플러스 보장보험 (1704)	0	0	0	0	
	(무) 백년친구 치매보험 (1904)	0	0	0		0
	(무) 간병비 평생받는 치매보험 (무해지환급형) (1809)	0	0	0		0
	(무) 간병비 평생받는 치매보험 (1811)	0	0	0		0
	(무) 간병비 평생받는 치매보험 (무해지환급형) (1811)	0	0	0		0
	(무) 간병비 평생받는 치매보험 (1904)	0	0	0		0
	(무) 간병비 평생받는 치매보험 (무해지환급형) (1904)	0	0	0		0
	(무) 중증치매보장특약 I	0			0	
	(무) 중증치매보장특약 I (저해지환급형)	0			0	
	(무) 중증치매보장특약Ⅱ (갱신형)	0			0	
	(무) 치매간병특약	0			0	
- at	(무) Level-up Cl특약 l	0			0	
특약	(무) Level-up 보장특약 l	0			0	
	(무) Level-up 보장특약 II	0			0	
	(무) 뉴-치매보장특약	0			0	
	(무) 치매보장특약 I	0	O (2019. 1월 이후)	O (2019. 1월 이후)	0	
	(무) 치매보장특약 I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0	0	0	0	
	(무) 경증치매보장특약 I		0	0	0	

~~~~ 보험금 청구 방법

 인터넷
 • DB생명 홈페이지(PC, 모바일)를 통하여 접수 (24시간 이용 가능, www.idblife.com ▷ '사고보험금' 메뉴)

 • 수익자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른경우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업로드해 주셔야 합니다)

 모바일 앱
 • DB생명 모바일앱(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DB생명'검색)을 통하여 접수

 • 수익자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미성년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FAX

 • 사고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구비서류를 사고보험금 청구 전용 팩스번호로 송부

 • FAX번호: 0505-129-3134 (사고보험금 청구 전용)

(인터넷/모바일 앱/FAX 접수는 16시까지 접수된 건만 당일 접수 처리, 이후 접수건은 익일(영업일 기준)에 처리됩니다. [청구금액 300만원 이하만 가능]

• 사고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구비서류 우편송부 (※분실 및 도달여부 확인 문제로 등기우편을 권장합니다.)

• 보내실 곳: (04798)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 123 SMT빌딩 5층 DB생명 보험금 접수 담당자

방문 • 고객센터(창구) / 지점 방문 접수 • 신분증/구비서류 지참 • 이용시간 : 09:00~ 18:00

문의 1588-3131 → 2번(입원, 수술, 실손 등 사고보험금 상담) → 0번(상담사 연결)